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1. 검토 배경

▣ 최근 이 모 부장판사의 인터넷 익명 댓글이 공개되어 파장

▣ 유사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검토 필요

- 현직 법관들로만 구성되고, 모든 글을 익명으로만 올리게 되어 있는 인터넷 카페(모임)가 활발히 활동 중임
- 위 익명게시판의 내용이 유출, 공개될 경우 내용에 따라 이 모 부장판사 사건과 유사한 파장 예상됨
- 수백 명의 법관이 활동 중이어서 이 모 부장판사 사건처럼 '특정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논리로 방어할 수 없고, 해당 글이 법관 조직 전체의 인식과 언행을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치명적 위험성

▣ ①먼저 위 익명 인터넷 카페의 현황과 게시글의 전반적 성향을 살펴본 후, ②政務的인 관점에서 몇 가지 대응방안을 검토함

2. 카페 현황

▣ 명칭 : '이판사판야단법석'

-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위치(http://cafe.daum.net/leeprosapro)

▣ 개설 일자 및 운영진

- 2014. 10. 24. 개설
- 개설자는 ○○지법 OOO 판사(35기, 남편은 32기 OOO 판사)로 알려져 있음
- 현재 카페지기(최고 운영자) 역시 개설자인 OOO 판사로 알려져 있고, 추가로 7명의 판사가 운영자로 등록되어 있음

▣ **가입자 수 및 활동 정도**

- 2015. 2. 15. 기준 총 가입 법관 384명
  - 실명과 코트넷 메일을 통해 현직 법관임을 확인한 후 정회원 자격 부여
  - 기존 법관회원이 다른 법관을 회원으로 초대하는 기능을 통해 회원수 급증
  - 개설 3개월만에 가입 법관이 300명을 넘고, 매주 가입 법관이 30명 이상 증가할 정도로 급증세에 있다가 2월 들어 1주당 10여 명 선으로 증가세 다소 둔화. 이 모 부장판사 사태 이후 가입자 증가 미미함
- 매주 250명 안팎의 법관이 위 사이트를 방문하고, 매주 300건 안팎의 게시글(댓글 포함, 댓글 제외한 **본글은 매주 30건 정도**)이 올라올 정도로 활발히 활동 중
  - 원세훈 판결, 상고법원, 대법관 제청 등 주요 사법부 이슈에는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림
  - 인터넷 아이디는 물론 닉네임, IP주소 등도 전혀 표시되지 않는 완전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글 작성자를 알 수 없음은 물론 동일한 사람이 작성한 글인지 여부도 확인 불가능함
- 1일 방문수가 1000건 이상으로 집계될 정도로 1일 수차례 방문하는 적극 활동 법관이 상당수로 보임 (**대부분의 글이 근무시간 중 작성**)

▣ **게시판 구성**

- 정의의 플랫폼(사법부 관련 의견 개진) / 업무Q&A / 인사연수정보 / 책창고 / 세상 보기(사회 전반 의견 개진) / 도와주세요 / 잡수다 / 카페 운영 관련건의 게시판으로 구성됨
- 도서 소개하는 책창고 게시판 제외한 모든 게시판이 비교적 활성화

3. 게시글 분석

▣ **법원 내부의 내밀한 정서나 인식을 언급하는 내용이 많아 유출, 공개시 위험성 큼**

☑ 실제 게시글
- 전관예우에 관한 30여개의 댓글 중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많은 판사가 법원에 근무 중', '주변 부장님 심지어 단독 중에 있다', '부장이 대놓고 봐줘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불가능한 결론이 나왔다'**는 취지의 댓글이 상당수 (전문은 별지 첨부)
- 원세훈 사건 1심 재판장의 고등부장 발령에 관한 50여개의 댓글 중 '이○○ 부장의 승진 사례가 다른 법관들의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위 법관들이 **대법관 승진을 위해** 여당, 야당의 눈치를 보며 미담사례로 소개될 **판결을 일부러 만들어 내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
- 신○○ 대법관님 퇴임 관련 기사에 대한 50여개의 댓글 중 '개전의 정이 없다', '퇴임 후 대통령에 의해 정무직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
- 최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는 글
- 합의과정에서 부장과 견해가 다른 경우 대응방법에 관한 20여개의 댓글

▣ **사회 및 사법부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드러내는 내용도 매우 많음**

● 소장 판사가 대부분이어서 사법부 정책이나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도 상당수 있으나, 표현과 수위는 대체로 정제되어 있음

▣ **다만, 현재까지 저급한 '표현'이나 인신공격성 내용은 눈에 띄지 않고, 나름 건전한 수준의 표현과 자정력을 유지하고 있음**

▣ **게시글 유출 가능성 관련 카페 내부 논의**

● 지난 달 카페 회원인 법관이 전관예우 관련 글을 언급하면서 '외부 유출시 문제소지가 큰 게시글에 대해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

- 토론이 이루어졌으나, 다수 회원이 '동료법관을 믿자, 문제되면 그 때 폐쇄하자' 는 정도의 입장을 보임

- 운영자도 '동료법관의 글의 내용까지 관리할 수는 없다' 는 취지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공지함

● 최근 이 모 부장판사 댓글 공개 사건 이후

- 위 카페의 익명 댓글도 위험한 것 아니냐는 염려의 글이 몇 개 달렸고, 유출경위 등에 관하여 가입자의 관심이 크나, 추가 논의는 없는 상황임

4. 대응방안 검토

▣ 기본 고려사항

● 위 **카페의 존재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함

- 언론에서 취재에 나설 경우 게시글이 유출될 가능성 큼

● 가입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가입 법관에 의한 유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외부 유출에 대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내가 알릴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심지어 **좀 알려지면 어때라는 생각**이다. **자체정화로 안되는 문제가 공론화되어 이참에** 사법부 독립 및 신뢰회복이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으냐' 는 위험한 태도를 드러낸 글도 있었음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출되서 문제되면 그 때 카페를 폐쇄하자' 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가입자가 상당수 있음

- 퇴직하는 법관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공지되어 있으나, 퇴직하면서 관련 글을 출력하거나 저장하여둘 가능성도 있음

● 이 모 부장판사 사건으로 카페 가입 법관들이 게시글 유출에 대한 우려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활용할 필요 있음

- 현재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적기에 마련되어야 함

● 특정 카페의 활동에 대한 개입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억압으로 **비춰질 우려**가 큼

- **반발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선시되어야 함

▣ 참고사항 : 국내외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

● Senior Presiding Judge for England and Wales(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관할하는 항소법원장 격)가 2012년 제정한 **법관을 위한 인터넷**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규정

- '익명으로 블로그 등 인터넷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신상정보가 밝혀지지 않는다고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관은 인터넷에 글을 게시함에 있어 자신이 법관임을 밝혀서는 아니되고, 법관임이 밝혀질 경우 법관의 공정성과 사법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의사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인터넷 사용 가이드라인이 익명 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함

- 위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 규정에 반하는 기존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

- 위 규정은 영국에서 일부 법관과 언론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함

- 위 규정을 포함하여 외국의 유사 사례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 및 연구 필요함 (국내에서는 공직자 또는 법관의 인터넷 익명 활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1. 11. 29.자 권고의견

-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도 요구되므로, SNS 사용시 신상정보와 게시물 공개범위 설정 및 게시물 관리 등에 신중하여야 한다.

-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견표명시 자기절제와 품위유지에 유의하고,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 미칠 우려가 있는 외관을 회피하여야 한다

- SNS사용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공감하였으나, 아직 미제정

● **공직자 SNS 사용원칙**과 요령

-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 7.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

- 공론화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 기밀을 유지할 것, 정책 및 업무와의 일치성을 고려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대응방안1] 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권유하는 방안 ⇨ 효과 미약

● **[개요]** 공식 사법행정라인이 아닌 카페 운영진 소속법원의 선배, 동

료 법관 등이 게시글 유출가능성과 위험성을 경고하고, 신중한 운영, 위험성 있는 글의 삭제 또는 실명화 등을 권유하는 방안

- 장점 : 사법행정권자가 직접 개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반발이나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운영진 입장 변화시 일거에 문제 해결 가능

- 한계 및 위험성

  - 운영자가 이미 지난 달 '외부 유출에 대비하자' 는 내부 제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운영진의 성향상 **입장 변화 가능성 희박**

  - 그간의 글에 나타난 운영진의 성향상 사법행정권자가 아닌 단순한 선배 법관의 권유 내지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반발할 가능성 있고, '가입 법관 다수의 제안 내지 동의' 라는 명분이 없는 한 운영진 주도로 종전 운영방식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대응방안2]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 실현 가능성 미미**

- [개요] 소장 판사가 운영 및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위 카페에 신중함을 갖춘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하여 게시글 **유출가능성 및 위험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내부 변화 시도

- 장점 : 내부 구성원 설득을 통해 자연스러운 변화 가능함

- 한계 및 위험성

  - 실제 카페에 가입해 문제제기를 하는 역할을 맡을 선배 법관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소요됨

  - 위 카페가 선배 법관에 의해 주도된다고 느낄 경우 운영진이 **소장 판사를 위한 또 다른 익명 카페를 새로 개설할 가능성**도 있음

▣ **[대응방안3] 법관 전체에 익명글 작성 관련 주의 공지를 하는 방안 ⇨ 추가 검토 필요**

● [개요] 법원장이나 수석부장 등이 위 카페를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 채 최근 이 모 부장판사 사태와 관련하여 법관은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더라도 극히 신중하여야 한다거나 근무시간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함을 공지함으로써 현재 카페 가입자들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함

- 카페를 언급할 경우 오히려 법관 사회의 관심을 불러 가입자가 급증하거나 외부에서 카페의 존재를 인지하여 취재를 시도할 위험 있음

● 장점

- 이 모 부장판사 사태로 인해 카페 가입 법관 스스로 느끼고 있는 염려를 활용할 수 있음

-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카페의 활동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아니한 채** 카페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위 익명 카페 뿐만 아니라 다른 포털사이트에 운영 중인 여성법관 카페 등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도 신중함이 더해질 수 있음

● 한계 및 위험성

- 익명 활동의 자제 및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의 메일만으로 위 카페의 활동이 현저히 신중해지거나 위축되지는 않을 수 있어 효과 크지 않을 가능성

- 신중해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종래의 활동**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어서 **일시적인 억제책에 불과**함

- 카페를 언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익명 카페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다소 민감한 사안이어서 각급 법원 공지메일의 '워딩'에 따라 예상치 못한 반발 가능성도 있음

▣ **[대응방안④]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 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

● [개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SNS 사용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

인 제정 필요성 공감하고도 아직 제정하지 못한 가이드라인을 **익명 활동을 포함**하여 제정

- 장점 : 충분한 검토 후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명확한 해결책 제시
- 한계 및 위험성

- 위 카페 게시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방안은 될 수 없고,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있음

▣ **종합검토 : 3안을 중심으로 정무적인 측면까지 다각도로 고려하여 대응방안 추가 검토 필요**

- 2. 14. 이 모 부장판사 사표 수리 후 법관 조직의 여론 동향, 언론의 논조 및 위 카페의 변화 추이를 계속 관찰
- 위 특정 익명 카페에 대한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법관의 인터넷상 익명 및 실명 활동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외국에서 공직자 또는 법관의 인터넷 익명 활동에 대한 규제 내지 가이드라인에 관한 심도 있는 추가 연구조사 필요.
- 장기과제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검토 필요. 끝.

전관예우 (세상보기 게시판) 조회수 559 작성일시 2015. 1. 29. 09:57

요즘 저한테 꽂힌 단어입니다.
인사철을 앞두고 개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가 작년에 개업하여 얼마 벌었다는 소문도 들리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전관예우가 뭐 얼마나 있겠어. 있어봤자 결론을 바꾸겠어? 세간의 오해 아니겠어? 라는 정도로만 치부했는데요.
항상 제가 빠지는 함정이지요, 남들도 나와 같을 것이라는..... 이해관계에 대한 상상력 부족에서 오는.
위 생각들은 여전히 유효하긴 합니다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절차상의 편의봐주기 또한 공정한 재판에는 맞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느끼는 것은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많은 판사님들이 법원에 계시**기 때문에 저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예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래의 수혜자들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의 단초는, 법원을 나가신 분들이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벌까? 왜 형사사건에 쏠릴까? 였던 거 같습니다. 그것도 개업하고 1, 2년 안에 특히나...
전관은 왜 돈을 많이 벌까요?
물론 전관의 메리트를 그야말로 전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로서 발휘한다면 상관 없겠지만요.
익명이라고 하니 이런 글도 올려봅니다.

댓글 30개
15.01.29. 10:22 저도 요즘 이 생각 많이 했는데. 뉘신지 모르오나 찌찌뽕입니다.ㅎㅎㅎ 법원이 전관예우의 문제를 직시하고 직면하지 않는 이상 신뢰는 공염불이라 생각합니다.
15.01.29. 10:24 형사사건 피고인과 그 가족은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이고, 그래서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판사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사실 비난하기 어려운 인지상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그러한 기대는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러한 기대에 기대어 사건을 수임하는 전관변호사들이겠지요.
ㄴ 15.01.30. 16:25 예전에 비슷한 문제의식의 글과 함께 많은 댓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원글 작성자가 어떠한 이유로 원글을 삭제하면서 댓글까지 다 없어진 것 같네요...ㅠㅠ

15.01.29. 10:38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많은 판사님들이 법원에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법원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실제 느끼시는 때가 많으신가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둔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외관상으로는 이런 것을 한번도 느낀 적이 없는데요.... 혹은 어떤 판사님이 전관변호사에게 다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판사님이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싶은데요..

ㄴ 15.01.29. 14:05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아래 댓글처럼 야박하게 굴 수 없다며 풀어주는 상황에서 나중에 자신이 나갔을 때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느껴지던데요.**

15.01.29. 10:30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있음을 외관상 티내는 판사가 있을까요?^^

ㄴ 15.01.30. 17:42 재댓글분 저랑 배석 같이 하신 분인 것 같다는ㅋㅋ 좌배님이랑 저랑 부장님께 엄청 저항했으나 일부는 막지 못했음을 반성합니다.ㅜㅜ

15.01.29. 10:38 첫번 째 댓글에 공감합니다. 한창 법원의 신뢰회복을 논의할 때, 저는 한번은 법원 정문에 “우리 법원에 전관예우는 없습니다.“라는 플란카드를 만들어서 걸면 어떨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입 밖에 내지 않아 우스꽝스러움은 면했어요.

ㄴ 15.02.02. 13:29 죄송합니다만, ’플래카드’가 맞습니다.

15.01.29. 10:54 **“그래도 OOO인데 면좀 세워줘야 하지 않겠어요...조금만 (1심 형량) 낮출 수 없을까요?“** 어떤 형사항소부장님의 솔직하신 토로가 배석들 사이에서 회자된 적이 있었죠. 법원의 염결성을 믿고 싶어했던 그 당시 순진한 저로서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ㄴ 15.01.29. 15:30 저는 지방에 근무할때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지방이라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및 서울을 거쳐서 이동했는데도 빈도는 물론 훨씬 적지만, 완전히 없지는 않더라구요(직접 경험만 한정한 건 아니구요, 어느 부장님이 그랬다더라 이렇게 간접으로 들은 경험까지 합해서요....) 처음에 받은 큰 충격이 슬슬 잊혀지고 무뎌지는 제 자신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15.01.29. 10:55 지방이라 그런지 동기 변호사들이 언제 형단하냐고 대놓고 물어보더라구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세일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ㄴ 15.01.30. 17:55 그런 이해관계가 포함된 인간관계면 일찌감치 단절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너무 매정한가... 죄송

15.01.29. 11:12 윗윗 댓글과 같은경우 꽤나있는 것으로 전해듣고, 저도 충격 받았습니다.

15.01.29. 11:16 부정적인 예는 댓글에 많이 나왔으니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법원 내에서도 유능하다는 평판이 자자했던 전관변호사님을 민/형에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의 사건 수임방식이나 지인인 판사들에 대한 영향력 여부는 모르겠으

나, 완벽한 논리체계를 갖춘 민사 준비서면(그 자체로 판결문같은 완결성), 치고 빠질 때를 아는 형사 의견서 내용과 공판준비태도, 재판부와 상대변호사 또는 검사를 향해 정중히 예의를 갖추면서도 사건의 핵심파악과 논리적 공방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시니까 사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더군요. 전관예우라는 색안경이 이런 실력있는 전관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ㄴ 15.01.29. 11:21 아무래도 법원 출신 변호사가 재판 준비와 진행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굳이 특정비교는 삼가겠지만, 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ㄴ 15.01.29. 11:37 이길 사건을 골라서 맡아서 승소율이 높을 수도 있어요 일단 사건이 몰릴테고 판사의 감으로 이길 만한 것만 골라 맡는다는 거죠

ㄴ 15.01.29. 12:30 이길 사건을 골라서 맡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선호"로 인한 부수적 효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소장과 준비서면을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변론도 깔끔하게 하고, 특히 증인신문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만의 느낌인가 모르겠습니다.

ㄴ 15.01.29. 15:31 반면 **놀라울 정도로 무례한 변호사**님이 있어서 검색해봤는데 **고위 법관 출신**인 경우도 좀 있지 않나요? 전 사실 몇번 경험했는데...--;;

15.01.29. 11:42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돈이죠

15.01.29. 15:29 저는 전관예우란 없다고 믿고 있고, 저 스스로 전관예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사건 진행해 왔으며(다행히 배석일 때 부장님도 그런 분이 없었음),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제가 너무 순진한건가요? 물론 법원에 계셨던 분들이 주장을 잘 하시고 진행도 잘 하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ㄴ 15.01.29. 17:08 제가 전에 딱 그랬거든요. 나와 내 주위가 그러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무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그 존재자체에 무지했어요. 저를 탓하는 것이니 오해 마셔요.

15.01.29. 15:48 전관변호사님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젊은 단독 판사가 젤 무섭다고 이야기하고요. 예전에 한번 고등부장님 출신 변호사님이 '소정외변론'을 하고싶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랐던 우리부장님 **안된다고 매몰차게 했다가, 나중에 그분이 누군지 알게된 후 '우리랑 같이 계셨던 분인데..'하시며 허용**하시더라구요. 그게, **법원에 남은 사람에게는 '평판'의 문제로 압박** 내지 작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만요.

15.01.29. 15:52 반면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나요? 전관이고 재판장과 잘 아는 사이면서도 소정외 변론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들. 특히 법원 재직 중에도 전관예우나 소정외변론에 대해 비판적이셨던 분들인데. 가끔 그런 분들이 전화하지 않으면,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내 인간성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 했는데, 원래 그분들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이처럼 사직한 이후에도 법원

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싶네요.

15.01.29. 18:01 나와 내 주위(특히 배석판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그렇다고 믿었던 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부장님을 비롯해서 단독판사들도 몇번 경험했습니다. 부장님들이 대놓고 봐줘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전관변호사님들은 사건 하나 잘 만나면 억 단위로 돈을 벌지요. 우리의 얕은 상상은 초월하는 듯해요. 돈이 그렇게 걸려 있는데 소정외 변론이 두려울까요? 아예 안 될 사건을 들이미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 될만한 사건, 애매한 경계선 상의 사건이고, 그런 사건에서 전관임을 이용해서 무조건 된다고 선임하고, 또 실제로 되게 만드는 거죠 뭐.

15.01.30. 02:15 제 주위 얘기를 듣건대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원인 중 상당 부분은 소위 말하는 사무장들, 사건브로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전관예우나 판사와의 관계를 들먹여 사건수임료를 올리고 자기가 먹을 파이의 크기를 뻥튀깁니다. 실제 전관예우라 하는 것은 옆회사 출신은 엄청 많고, 우리회사도 가끔 들려오는 얘기로는 - 거의 **불가능한 결론이 나왔다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대부분은 아닐거라 생각하는데, 부인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있는가봅니다

ㄴ 15.02.03. 09:24 맞습니다. 다만 전관들도 최소한 알면서 묵인하거나 한마디씩 거드시겠지요.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공정하고 떠들어도 한번 그 시장을 겪어본 사람(국민)들이 법원이나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는 기여하는 것 같아요.

15.01.30. 09:36 저도 꽤나 순진했나 봅니다. 씁쓸하네요. 그래도 순진한 사람들은 모를 정도고 위에서 나온 얘기 정도라면 법관의 권한에 비추어 볼 때 놀라울 정도로 청렴한 것 아닌가 하고 위안해 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깨끗한 조직이 아닐까요...

15.01.30. 14:59 주변에 다른 사람이 전관을 예우하더라-보다, 적어도 나는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게 재판을 하자-는 의지가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 대법관님께서 대법관 되시기 전에 사석에서, 판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인간관계 단절을 감수하셨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판사의 길과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사람의 길을 따로 있고, 판사의 길을 선택한 이상 그 길만 걸어야 한다고 하셔서 깊이 감명을 받았더랬습니다.

ㄴ 15.01.30. 15:01 - 다만, 법원에서 '예우'를 하지 않음에도, 사람들의 기대로 인한 사건쏠림-유리한 사건 수임-좋은 결과, 브로커 또는 변호사의 거짓말(판사와 친해서, 전관이라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선전하는 식), 또는 경험과 실력에 따라 전관변호사님들이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등의 현실과 그로 인한 국민의 '오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응이 필요하겠지만요.